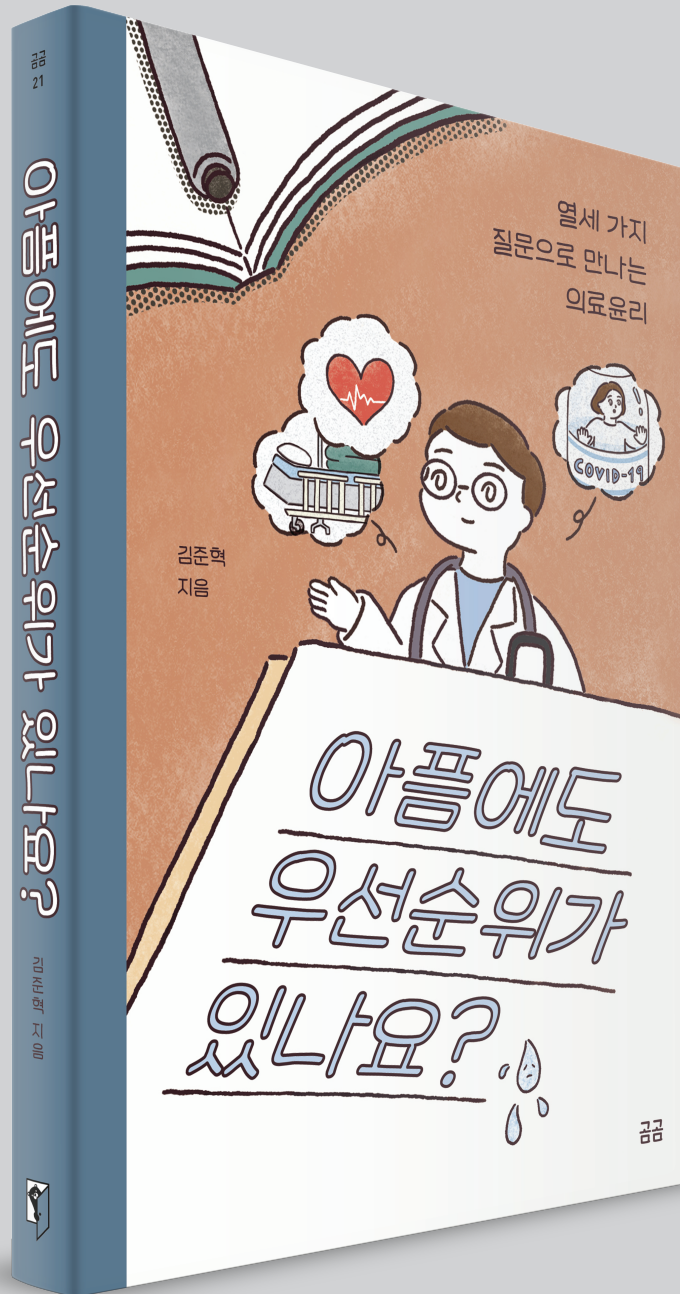


수업 활동지 집필 봉원중학교 국어교사 고지연
 고덕중학교 사회교사 최윤서
 이대부속고등학교 국어교사 송현민



분야

청소년 > 인문/사회

키워드

#의료윤리 #생명윤리 #안락사 #유전자조작 #의료데이터

활동지 구성 의도

1. 책의 구성 소개

이 책은 '인간의 건강과 삶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위해 살펴야 할 의료윤리의 주요 주제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의료윤리'가 의료인의 행동에 관한 규범뿐만 아니라 의료적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환자와 가족에게 좋을지, 옳을지 생각하는 방식임을 밝히고, 각 장의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의료윤리가 필요할지 깊이 생각해 볼 계기를 제공합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락사, 유전자조작, 성형수술 등 의료를 둘러싼 익숙한 논쟁부터 임신중지, 의료데이터, 백신 접종 선택권과 같이 최근 첨예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체 자기결정권, 다이어트, 성정체성 탐구 등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문제 또한 다루고 있어 책을 읽는 청소년의 폭넓은 공감과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질문과 관련해 양육자와 교사를 위한 의료윤리 가이드를 통해 아동·청소년과 의료윤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수업할 때 활용할 만한 다양한 참고 자료(책, 영화 등)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활동지 구성 및 구성 의도

활동지는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앞으로 의료적 결정 주체가 될 아동·청소년이 이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 능력에 초점을 두고 구성하였습니다. 책에서 다루는 각 주제와 관련된 논쟁점을 이해하고 상반된 입장들이 내세우는 근거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에 대해 먼저 정리해 본 뒤, 자신의 생각을 밝히거나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보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지가 아동·청소년이 건강과 아픔 앞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민, 우리에게 어떤 의료윤리가 필요할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민이 되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동지는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익힌 후 그 내용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읽기 전 활동인 '들어가며'는 각 장의 제목과 장의 소개 글을 통해 장의 내용을 예측하고, 관련 경험 및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활동 동기를 부여합니다.

읽는 중 활동인 '내용 확인하기'는 주어진 질문에 답하며 각 장에서 소개하는 핵심 개념을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활동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글의 핵심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하며 익히도록 합니다.

읽은 후 활동은 '생각 넓히기'와 '활동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 넓히기'는 보조 자료를 통해 장의 내용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계발하도록 합니다.

'활동하기'는 배우고 익힌 내용을 여러 매체 자료나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갈등을 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입니다. 그 과정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함으로써 독서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례

1차시 나도 치료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을까?

2차시 중2병이라고들 하지만, 나 우울증 아닐까?

3차시 다양한 성과 젠더, 어떻게 대해야 할까?

4차시 고통만 남았을 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

5차시 내 마음대로 눈이나 코를 성형해도 될까?

6차시 유전자가위 기술로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세상, 좋지 않을까?

7차시 아이를 낳는 것은 누가 결정할까?

8차시 코로나19 백신, 위험하다는데 맞아도 될까?

9차시 적게 먹어서라도 마른 몸이 되고 싶은 나, 이상한 걸까?

10차시 아픔에도 우선순위가 있을까?

11차시 유튜브에 의료광고가 나와도 괜찮은 걸까?

12차시 헬스 앱에 저장된 내 데이터는 어디로 갈까?

13차시 장애는 치료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들어가며

1. 최근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간 적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Q. 당신의 질병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나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Q. 궁금한 것을 의사에게 편하게 질문할 수 있었나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아니다	매우 아니다

Q. 만약 의사에게 편하게 질문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내용 확인하기

1. '신체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p.13)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의 ()을/를 구성하는 여러 부분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결정의 권리가 ()에게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권리

2. '신체 자기결정권'이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13-14)

과거에는 ()이 지닌 특수성 때문에 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의학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기기도 했으나, 사회 변화와 함께 환자의 몸에서 일어나는 치료에 ()의 뜻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커졌기 때문이다.

3. '청소년 신체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p.15)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에 가해지는 변화를 포함해 혼자서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그 결과를 감당하기에 ()·() 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4. '충분한 설명에 의한 동의'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p.16)

의료인은 환자에게 주어진 ()에 대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을/를 내려야 한다는 의미

생각 넓히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이 어떤 측면에서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써 봅시다. (p.13-18)

(...) 정신보건법은 복지보다 ‘강제입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1995년 만들어져 이듬해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 제24조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즉 보호입원의 절차와 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가족(보호의무자) 한 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한 명의 진단이 있으면 최초 6개월 동안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이후 6개월마다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스스로 입·퇴원을 결정하는 ‘자의입원’, 전문의 진단과 지자체장 승인을 거쳐야 하는 ‘행정입원’, 자·타해 위험이 높을 때 전문의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응급입원’ 등이 있긴 하나, 실제로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6년 12월 기준 입원 환자 6만 9,162명 가운데 보호입원은 절반이 넘는 61.5%(4만 2,523명)를 기록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정신보건 체계는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가 아닌 병원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신장애로 입원한 환자의 사지를 침대에 묶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정신병원에서 불법 감금과 강제 투약 등 인권 침해가 벌어진 사건이 뉴스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도 그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진정은 총 1만 7,795건에 달했다.

출처: “강제입원’ 완전 폐지, 국회가 받아든 숙제”, 《비마이너》, 2023.04.06.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15>)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측면	
그렇게 생각한 이유	
해결책	

활동하기

1. 여러분이 죽음을 앞둔 환자라면,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을 읽고, 가족과 의료진에게 연명의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는 글을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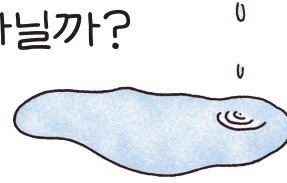
환자의 의향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이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으며, 환자 가족들은 심리적 혹은 사회적 부담을 덜어 낼 수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뜻한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https://www.nhis.or.kr/magazin/168/html/sub3.html>)



들어가며

1. 여러분은 최근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누군가 '사춘기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상황	
상대	
기분	

2. 만약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상대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봅시다. (p.29-34)

()의 특징으로는 짜증, 수면 시간 증가, 타인과의 소통 거부 등이 있다.

기운이 없거나 침울한 상태가 아닌, 무단결석이나 비행 등 위장된 형태로 드러나는 우울증을 ()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부정적인 평가나 대우를 받음으로써 그 대상이 실제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라고 한다.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의 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신과는 이름을 ()로 바꾸었다.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우울증의 별명은 ()이다.

생각 넓히기

1. 저자는 우리 몸의 모든 문제를 병원이 해결해 주는 사회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사회라고 말합니다. 다음 기사를 읽고 ‘의료화’가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써 봅시다. (p.35-39)

(…) 의료화는 이전에 의료 영역 내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료 영역 밖에 놓여있던 특정 행위 및 상태가 질병 내지 장애로 인식되고, 정의되고,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현상 및 과정을 일컫는다. 여드름, 탈모,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비만, 성형 등은 일상적 삶의 차원을 넘어 의료의 전문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된 의료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의료화 현상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근대 의과학에 바탕을 둔 의학 지식의 체계화와 의료 전문인의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근대 의과학의 생의학적 모델에서 건강은 신체 구조와 기능의 생물학적 완성을 의미하며, 건강은 생물학적 ‘정상성’으로 질병은 생물학적 ‘비정상성’으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비(非)-의료적 문제들은 점차 질병 내지 장애로 인식되었고, 질병은 극복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치료가 사회적으로 요청되었다. 이를 통해 점점 더 일상적 삶은 의료적 지배, 영향, 그리고 감독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생명공학의 성장으로 인해 탄생, 노화, 죽음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전(全) 과정들이 인위적인 의료적 개입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고, 현대인들은 이제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의료체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 예컨대, 노화의 의료화는 나이 들이라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을 비정상적인 것 내지 극복의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며, 노화유전자와 같은 노화의 원인과 이를 억제하는 과학적 이론 및 기술에 대한 검증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병장수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여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을 거슬러 가는 시도를 정당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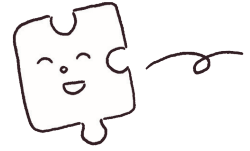
출처: '의료화의 시대에서 건강한 사람이란', <경북일보>, 2022.04.28.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0510&sc_sub_section_code=S2N63)

활동하기

1. 여전히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심적 문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정신건강의학과에 편안히 방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웹포스터를 구상해 봅시다. 구체적인 대상과 목적을 설정하여 구상해 보세요. (p.39-41)

대상	ex) 교육부 관계자
목적	ex) 청소년 대상 전문상담센터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웹포스터



들어가며

1.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걸모습을 보고 상대의 성별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주로 상대의 어떤 부분을 보고 성별을 알아차리나요?

2. 상대의 성별을 잘못 알았던 적이 있었나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내용 확인하기

1.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의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p.46-48)

섹스	신체적 특징에 따른 남성, 여성, 또는 그 외의 구별. ()성. 외성기, 염색체, 호르몬 등의 기준에 따라 여성, 남성, () 등으로 나뉨.
젠더	()성. 태어날 때 외부에서 규정한 성과 자신의 성 인식이 일치하는 경우를 (),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이라고 부름.
섹슈얼리티	개인이 느끼는 ()와/과 그것을 표현하는 행위 양식, 그리고 이것을 규정하고 규제하는 ()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 성적 지향과 그 행위 및 이것을 사회가 다루는 방식.

2. 소수자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겼던 역사적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p.49-51)

전환 치료	
나치 독일	

생각 넓히기

1. 여러분은 자기 성 정체성의 탐색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가진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일까요? 여기, 성장 소설의 주인공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마음껏 상상하며 이야기를 창작해 봅시다. (p.51-54)

이름	
성별 정체성	ex) 트랜스젠더 여성, 시스젠더 남성, 논바이너리...
성적 지향	ex) 양성애자, 이성애자, 무성애자...
나이	경험
ex) 13세	ex) 같은 반의 친구에게 성적인 끌림을 느꼈다. 상대는 같은 성별의 아이로, 주변의 친구들이 다른 성별에 끌리는 것과 달리 자신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어렵듯이 깨달았다.
()세	
()세	
()세	
()세	

활동하기

1.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젠더, 섹슈얼리티 규범에 들어맞지 않는 청소년은 어떤 경험을 할까요? 다음 글을 읽고 만약 여러분의 학교(또는 공동체)에 이러한 청소년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차별을 겪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할지 제안해 보세요.

“학교에는 성 소수자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쉬쉬하기에 바빴습니다.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동성애자 A씨·22)

한국 학교에서 성 소수자 학생들은 직접 괴롭힘과 차별, 배제의 대상이 되면서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4일 온라인으로 한국 성 소수자 학생 따돌림 연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학교에서 성 소수자 학생을 지지하고 포용하는 환경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한국 학교에서 생활하는 성 소수자 학생들이 겪는 괴롭힘 사례도 발표됐다. 한국 성 소수자 학생은 학교에서 언어적 괴롭힘과 물리적 폭력, 심지어는 성폭력을 겪으면서 정신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자 B(21)씨는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이 알려진 후 출석부 사진이 굵히거나 개인 악기를 파손당하는 등 괴롭힘을 겪었고, 이에 우울증과 불면증, 식이장애를 앓았다고 했다. 반복된 자해로 손목에도 흉터도 남았다. B씨는 “단 1초도 학교에 더 남아 있고 싶지 않았다”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감한 정보인 학생의 성적 지향에 대한 기밀성이 학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다. 각각 2018년, 2019년에 개정된 자살방지법과 정신건강증진법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내담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두 법률 모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기밀 정보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자들이 성 소수자 문제에 대해 교육받을 의무가 없어 성 소수자 학생들이 적절한 상담을 받기 어렵고, 교사들도 성 소수자 학생을 대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 과정에서 성 소수자의 존재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트랜스젠더 등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의 엄격한 성별 분리 관행 역시 성 소수자 학생들이 자신을 부적응자 등으로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됐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청소년 성 소수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과 차별은 정부의 무대응에 따른 문제일 뿐 아니라 차별·고립을 조장하는 현 정책들의 산물”이라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학교 운영진, 교사·상담원, 교과서 출판사 등에 대해서도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개별 권고사항을 밝혔다.

출처: “성 소수자 따돌림·배제 일상…‘학교가 싫었다’”, 〈연합뉴스〉, 2021.09.14.
(<https://www.yna.co.kr/view/AKR20210914035700004>)

차별 상황	
개선 방안	



들어가며

1. <미 비포 유>의 주인공 월은 성공 가도를 달리던 와중 큰 교통사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됩니다. 그는 삶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안락사를 신청한 뒤 남은 6개월을 보내기로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자신을 돌봐 줄 간병인 루이자 클라크를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내가 월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선택하고 이유도 적어 보세요. (p.57)

<미 비포 유> 작가 그리팅 예고편, 네이버 영화 예고편 저장소



① 기존의 결정대로 안락사를 선택한다.

이유:

② 결정을 바꿔 안락사를 취소한다.

이유:

③ 기타

이유:

내용 확인하기

1. 안락사, 존엄사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봅시다. (p.60-66)

	환자가 자신의 삶을 중단하기로 () 결정하고, 그 생명의 종단을 ()하는 것, 죽음을 () 것이다.	
안락사	()안락사	환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
	()안락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짐 예: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서 유대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학살
존엄사	환자가 ()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죽음을 () 것이다.	

2.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p.61)

Blank yellow area for answer to question 2.

3. 우리나라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고, 존엄사를 법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존엄사를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p.62)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존엄사를 허용하였다.

4. 존엄사와 달리 안락사는 ‘죽음을 앞당긴다’는 문제가 있어 허용 여부에 대해 아직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책에 나온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p.64-65)

안락사 찬성 의견	안락사 반대 의견

생각 넓히기

1. 저자는 오늘날 소비 중심 문화의 사회가 고통과 죽음을 잊고 늘 젊음과 즐거움에 취해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고통이나 죽음의 문제에 관해 깊이 들여다보고 이야기 나누려 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자가 던진 ‘고통은 마치 절대 악과 같은 거라서 무조건 없애야만 하는 걸까요?’라는 질문에 대한 니체와 하이데거의 견해를 정리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p.69-70)

니체의 생각	
하이데거의 생각	
나의 생각	

활동하기

1.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충동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상담과 숙고를 거쳐 사려 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예) 스페인, 의사에게 안락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여야 하고 안락사에 앞서 고통을 경감할 방법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일 간의 숙고 기간에 의료진의 조언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치고, 이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안락사 결정을 재확인해야 한다.

출처: "존엄한 죽음은 기본권" ... 유럽국가들 잇따라 안락사 합법화 중, <동아일보>, 2023.04.2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428/119065253/1>



들어가며

1.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등교할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나요? 거울에 비친 나의 외모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question 1.

2. 만약 본인의 외모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바꾸고 싶다고 생각했나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question 2.

내용 확인하기

1. 성형수술이나 외모 관련 시술이 이끌어 낼 수 있는 결과가 한정되고, 성형이 개인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p.78-80)

① 비가역성:

② 수술 자체의 한계:

2.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는 환자의 마음이 오롯이 환자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외모를 바꾸겠다는 결정은 남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기준과 관점에 맞추려는 노력인 경우가 많 습니다. 아름다움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아름다움의 기준이란 어떻게 생겨날까요? (p.82)

아름다움은 어떤 형태가 주는 만족감에 기반하며, 그 만족감은 우리가 속한 ()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 ()이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이 외모의 기준이 되며, 성별 고정관념이 외모와 아름다움의 구현을 좌우한다.

4.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수술이 아닌, 외모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것을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까요? (p.85-86)

5. 성형수술을 선택하기 전 우리는 어떤 것을 차근히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p.86-87)

생각 넓히기

1. 외모지상주의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외모 관리가 왜 필요한지, 외모로 인한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 <별일 없이 산다 - 외모지상주의 편>을 시청하고 활동지를 작성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 봅시다. (p.85-87)



'외모지상주의', <EBS 별일 없이 산다>

· 주요 내용:

· 시청 일자: 년 월 일

- 영상의 의도나 목적은 무엇인가?
- 시청자에게 던지는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 영상에 사용한 자료는 무엇인가?
- 영상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 영상에 나오는 기본 개념이나 이론은 무엇인가?
- 영상에 담긴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 영상의 관점(시각, 방향성)은 무엇인가?
- 영상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활동하기

1.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모에 대해 많은 사람이 압박을 느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최근 발달한 SNS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를 읽고, 예시를 참고하여 SNS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제시할 ‘이용자들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p.85-87)

눈을 땀 수 없는 화려한 이미지가 끝도 없이 쏟아지는 그곳, SNS. 이에 홀린 듯 피드를 스크롤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어느새 소셜 미디어에 깊이 잠식당하게 된다. 업로드한 게시물의 좋아요와 공유 횟수가 늘어날수록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며, 사진 속 인물들을 기준으로 미적 기준이 자리 잡힌다. 그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자괴감과 열등감에 상처받기도 부지기수.

“SNS 앱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이들은 바로 청소년이에요.” 피부과 전문의이자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에이미 웨슬러(Amy Wechsler) 박사는 말한다. “청소년기는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따라서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으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상태죠. 어두컴컴한 방에서 홀로 스크롤을 내리는 그들에게 소셜 미디어 앱은 블랙홀과도 같아요. 부정적 감정에 쉽게 빨려 들어가고 말죠.”

이러한 앱의 어두운 이면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소셜 미디어를 생산하는 회사들조차 인지하고 있는 것. 몇 달 전 <월스트리트 저널>은 충격적인 내용의 문건을 입수해 기사를 발표했다. 소셜 미디어계의 거물인 페이스북의 내부 고발자의 폭로로 세상에 공개된 이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SNS 앱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영국 10대 여학생들의 13.5%는 인스타그램 가입 후 자살 충동을 더 자주 느낀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 SNS 사용 후 극심한 식이 장애가 생겼다는 이들도 17%에 달했다.

(...) SNS와의 절연이 불가하다면, 휘둘리지 않고 똑똑하게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소셜 미디어 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많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는 SNS 기술 또한 시간이 흐르며 보다 스마트하게 진화했다.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소셜 미디어 앱에서 제공하는 필터 효과를 이용하면 온몸에 전신 타투를 새기거나 파격적인 핑크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후광이 비치는 천사 날개를 달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한 스타일의 미인으로도 금세 변신시켜 준다. 반사판을 비춘 듯 광이 나는 피부와 반듯한 눈썹, 도톰한 입술과 가름한 V라인까지. 손끝으로 화면을 한 번만 터치하면 완벽한 외모로 변신한 내가 탄생한다. 결코 실존할 수 없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찾기에 바쁘다.

“필터는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없애 버려요”라고 웨슬러 박사는 설명한다. “저를 찾아오는 환자들 중에 간혹 SNS 속 모습처럼 비현실적인 얼굴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모공을 아예 없애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피부과·정신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에반 레이더(Evan Rieder) 박사는 인스타그램 필터가 왜곡의 원천지라 여긴다. 단단한 자아와 자존감을 가진 사람도 비현실적인 필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그 모습에 익숙해지며 인식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SNS 앱은 ‘단순 노출 효과’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요. 특정 대상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호감도가 상승하는 현상이죠. 과하게 부푼 입술이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이내 이상하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서서히 매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출처: 'SNS 중독자는 필터', <얼루어코리아>, 2022.06.08.

(https://www.allurekorea.com/2022/06/08/sns-%ec%a4%91%eb%8f%85%ec%9e%90%eb%8a%94-%ed%95%84%eb%8f%85/?utm_source=naver&utm_medium=partnership)

예시) 청소년 대상 제한 표현 온라인 광고 가이드라인

- 청소년 대상 제한 표현은 광고를 집행할 때, 온라인 광고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와 가치관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적인 표현들을 의미합니다.
- 청소년 대상 제한 표현은 크게 선정성, 폭력성·혐오성, 반사회성 등 3가지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대상 제한 표현에 해당하는 광고의 경우 청소년접근제한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선정성 표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에서는 과도한 신체 노출과 같은 선정적인 표현,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표현,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표현 등의 선정성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폭력성·혐오성 표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에서는 잔인한 폭력, 살인, 고문 등의 표현을 통해 이용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혐오감 및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 반사회성 표현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에서는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전자가위 기술로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세상, 좋지 않을까?



들어가며

1. 영화 <가타카>의 예고편을 시청한 뒤 영화와 같이 유전자가위 기술로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세요.

가까운 미래, 우주 항공 회사 가타카의 가장 우수한 인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제롬 머로우는 큰 키에 잘생긴 외모, 우주 과학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냉철함, 그리고 완벽한 우성인재(유전법칙의 우/열성이 아닌 '우수한 유전자'를 가리킴)를 갖추고 있다.

토성 비행 일정을 일주일 남겨두고 약간은 흥분을 느끼고 있는 그의 과거는 우주 비행은 꿈도 꾸지 못할 부적격자 빈센트 프리만이였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신의 아이 빈센트는 심장 질환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고, 31살에 사망할 운명이었다.

빈센트의 운명에 좌절한 부모는 시험관 수정을 통해 완벽한 유전인자를 가진 그의 동생 안톤을 출산한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남다른 관심이 있던 빈센트는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주 비행사를 꿈꾼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한 그 어떤 시험이나 면접도 통과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마주하고, 집을 나간다. 동생과의 수영 시험 중 바다 한 가운데서 익사 위기에 처한 동생을 구하며 깨달은, '힘은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믿음과 꿈을 간직한 채.

청소부 생활을 전전하던 빈센트는 어느 날 최고의 우주 항공 회사 가타카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된다. 그리고 예견된 미래에 반기를 든 그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다. 유전학적으로 열성인 자에게 가짜 증명서를 파는 DNA 중개인 게르만은 우성인자를 팔려고 하는 유진 머로우와 빈센트를 연결시켜 준다. 유진의 유전학적 우성인자는 빈센트가 인생에서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열쇠다. 성공을 위해서 빈센트는 피 한 방울, 피부 한 조각, 타액으로 인간을 판별하는 사회를 속여야만 한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열성을 감추고 유진과 같은 키, 시력을 맞추기 위해 고통스럽고 고문 같은 수술까지도 견뎌야 했다. 제롬 머로우는 유진 머로우와 빈센트 프리만의 결합을 통해 탄생했다. 그 후 제롬 머로우는 당당히 가타카에 입사했고, 가타카에 같이 근무하는 아이린과 사랑에 빠지는 행운까지 누리게 되는데...

출처: 네이버 영화 <가타카>(https://tv.naver.com/v/9554042)



내용 확인하기

1.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이 퍼지면서 이제 유전자조작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를 생명체에 적용하려면 과학기술적으로 먼저 무엇이 확보되어야 할까요? (p.94)

()이 확보되어야 한다.

2. 안전이라는 과학기술적 문제 외에도 유전자조작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p.94-96)

그동안은 유전자의 ()으로 인해 각자의 재능이 우연하게 분포되었다. 하지만 유전자조작이 실현되면 ()이 무너지게 되어 사회가 더 ()해질 우려가 있다.

3. 우생학이 비판받은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세요. (p.98-101)

① (): 사회가 우등하다고 판단한 인간 사이의 결혼을 격려하고, 열등하다고 판단한 인간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강제했다.

② '뛰어남', '우월함' 등은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인데 이러한 사회적 ()을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생각 넓히기

1. 아래 영상을 보고 체세포 편집과 배아 세포 편집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고, 책 6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사용 주체·허가·관리가 불명확한 유전자 가위의 함정', <YTN 사이언스>(https://youtu.be/iSdVTN0tKGs)

체세포 편집	
배아세포 편집	
나의 생각	

활동하기

1. 크리스퍼-캐스9 유전자가위 기술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제니퍼 다우드나는 핵폭탄을 만들었던 과학자들처럼 크리스퍼의 위험성을 걱정했습니다. 2015년 《사이언스》지에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유전공학과 생식세포 유전자 변형을 향한 신중한 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위험과 혜택을 알릴 국제회의를 조직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과학자가 이에 동의하여 《네이처》지에 생식세포 편집을 하지 말자는 글이 실렸습니다. 저자는 유전자조작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생학이 남긴 교훈을 참조할 수 있을 거라 밝혔는데요. 현재 유전자가위 기술은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기술의 사용을 누가 허가해 줄지, 누가 기술을 관리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생학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사용, 허가, 관리 측면으로 나누어 답해 보세요.

<p>사용 주체 :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p>	
<p>허가 주체 : 무엇을 기준으로 허가해야 할까?</p>	
<p>관리 주체 : 무엇에 유의하여 관리해야 할까?</p>	



들어가며

1. '낙태, 임신중절, 임신중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1. 사연자는 아이를 가지는 것은 여성이고 여성의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인데 여기에 '죄'라는 표현을 붙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뮤니티에는 낙태죄가 없어진 것은 큰 잘못이고, 태어날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연자의 생각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p.105)

사연자의 생각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내용 확인하기

1. 낙태, 임신중지, 임신중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p.108-110)

용어	공통점	차이점
낙태		
임신중지		
임신중절		

2.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생기고, 낙태죄가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p.110-114)

낙태죄가 생긴 이유	()이 만들어질 때 ()인 이유로 낙태를 반대해 온 이들의 ()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낙태죄가 문제가 된 이유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18세기 () 시기 토머스 맬서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에 영향을 받아 가족 계획 운동을 벌이면서 ()을 위해 낙태를 장려했으나, ()이 낮아지자 다시 낙태를 반대하는 주장이 들려왔다.

3. 글쓴이가 ‘인간은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임신중지에 적용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p.116-117)

생각 넓히기

1.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2017헌바127)의 결정 요지 중 헌법불합치 의견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임신한 여성이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하여 전인적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이하 착상 시부터 이 시기까지를 ‘결정가능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낙태갈등 상황에서 형벌의 위하**가 임신종결 여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사정과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자기낙태죄 조항이 낙태갈등 상황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실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낙태갈등 상황에 처한 여성은 형벌의 위하로 말미암아 임신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소통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지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낙태를 실행하게 된다.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에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 예컨대,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의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기낙태죄 조항과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 인간의 세 가지 심적(心的) 요소인 지성, 감정,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어 원만한 인격을 지닌 사람의 것.

** 힘으로 으르고 협박함.

*** 일을 부탁하여 맡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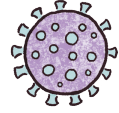
1) 여성이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근거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활동하기

1.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20년 내에 법이 개정되어야 했지만,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낙태죄 조항은 대체 법률 없이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입법 공백’이라고 합니다.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고, 전문가의 의견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해 봅시다.

입법 공백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
수술 관련 정보 부족:	
유산유도제 사용 불가:	
의료 가이드라인 미비:	



들어가며

1. 여러분은 코로나19 백신 외에 예방 접종이나 백신을 맞은 적이 있나요? 맞은 적이 있다면 왜 맞았는지, 맞지 않았다면 왜 맞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백신이 위험하다고 하니 맞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용 확인하기

1. ‘백신 손상’의 의미와 그 사례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p.124-126)

백신 손상의 의미	
백신 손상 사례	

2. 사람들이 백신을 특히 문제 삼고 관련 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126)

3. 글쓴이는 아동·청소년에게는 백신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p.127-130)

생각 넓히기

1. ‘방역 패스’에 관해 들어 본 적 있나요? 방역 패스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QR코드인증방식 보건의증명서입니다. 정부가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고 하자 반발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 봅시다.

반대하는 이유는?

대입 수험생이자 유튜버인 양대림 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양군은 먼저 또래들 사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을 맞으면 정부의 주장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주장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났다”라며 (...) 그는 이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고 말했다. 양군은 “오히려 백신을 접종받고 아팠던 친구들이 더 많다”며 “백신이 안정됐다면 맞고 자유롭게 생활할 텐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학생과 부모를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확산이 빈번히 이뤄지는 PC방, 노래방, 유흥업소 등이 아닌 학원, 독서실 등까지 적용되는 점을 두고 “학원이나 독서실은 오히려 학교보다도 관리가 쉬운데 못 가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충분한 설명과 근거가 동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부모가) 백신이 100% 안전하지 않고 부작용도 있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방역을 지키겠다고 그걸 존중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접종자 보호전략 vs 당연한 권리행사를 막는 일

일각에서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에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이 접종을 안 하셨으니 음성확인서라도 내는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보호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패스 확대에 불만이 많다는 기사들이 나오던데 지금은 그런 투정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번 겨울 어떻게서든 버티려면 백신접종부터 챙겨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예방 접종에 전력을 기울일 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천 교수는 이에 “미접종자 보호전략은 PC방, 유흥업소 등을 단속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백신접종에 집착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앗아갈 것이 아니라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아이들을 학원이나 독서실에 못 가게 하는 것은 방역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백신접종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양 군 역시 “몇몇 전문가분들이 이 정도는 ‘미접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접종은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접종 거부도) 당연한 권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연한 권리행사인데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1) 방역 패스를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반발하는 입장과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반발하는 입장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 2) 글쓴이의 관점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활동하기

1. 글쓴이는 우리가 과학과 윤리를 균형 있게 다루는 자세로 방역에 대해, 의료에 대해,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131쪽)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짜 뉴스 구별하는 법〉

1. 출처를 살펴보세요.
뉴스 방송사 혹은 신문사의 설립 목적, 연락처 같은 정보들을 알아봅시다.
2. 기사 제목만 읽지 말고 본문을 읽어 보세요.
뉴스의 제목은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으로 지을 때가 있습니다. 뉴스의 전체 내용은 어떤가요?
3. 작성자를 확인하세요.
작성자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실존 인물인가요?
4. 근거 정보가 확실한가요?
연결된 내용도 읽어 보세요. 관련 내용이 뉴스의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5. 날짜를 확인하세요.
오래된 뉴스를 다시 사용했다면 최신 사건에 대한 적절한 뉴스가 아닙니다.
6. 기사가 농담조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뉴스가 너무 이상하다면 풍자를 위한 글일 수 있습니다. 뉴스 방송사 혹은 신문사와 작성자를 믿을 수 있는지 조사해 보세요.
7. 당신이 선입견을 갖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8.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사서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사실 확인 누리집에 질문해 보세요.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과 관련된 뉴스를 두 가지 찾아보고, 체크 리스트를 활용해 해당 뉴스가
가짜 뉴스인지 판별해 봅시다. (사실 확인 누리집으로는 SNU팩트체크 누리집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목		
뉴스 일자		
기자 명		
언론사 명		
뉴스 내용 요약	뉴스에 제시된 사실	
	뉴스에 제시된 의견	

팩트 체크 리스트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믿을 만한가?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가 특정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 뉴스를 통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제목이 본문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압축했는가? (관심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뉴스의 작성자는 믿을 만한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의 수치에 오류나 누락된 정보는 없는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출처가 믿을 만한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뉴스에서 전달하는 사실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가 최신인가? (오래된 정보 및 자료를 가공한 것은 아닌가?)	
풍자 등의 목적이 아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뉴스인가?	
뉴스가 다루는 사실과 사건에 관해 선입견이 없는가?	
사건 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 및 사실 확인이 필요한가?	

팩트 체크 결과	가짜 뉴스다 / 가짜 뉴스가 아니다	
뉴스에 대한 내 생각	뉴스에 제시된 사실에 관한 생각	
	뉴스에 제시된 의견에 관한 생각	

적게 먹어서라도 마른 몸이 되고 싶은 나, 이상한 걸까?



들어가며

1. 여러분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 몸의 특징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해 봅시다.

2. 여러분이 원하는 몸은 어떤 몸인가요? 그 몸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용 확인하기

1. 글쓴이가 제시한 한국의 비만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 두 가지는 무엇이고, 그중 글쓴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p.136-138쪽)

2. SNS의 문제점을 '사회적 비교'와 '건강의 개인적 담론'이라는 말을 활용해 설명해 봅시다. (p.139-141쪽)

3. 글쓴이는 SNS를 응시의 문제로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을 왜곡된 '정상'의 모습으로 재단하고 변형 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분석의 효과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p.142-143쪽)

생각 넓히기

1. 133쪽의 사연자처럼 다이어트에 집착하면 섭식장애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섭식장애 권위자 김율리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인터뷰 기사 2편을 읽고, 섭식장애에 대해 알아봅시다.

반대하는 이유는?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하고, 날씬한 체형에 지나치게 중시해 몸무게에 집착하고, 몸매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왜곡하는 정신질환이다. 심리적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음식이나 체중, 몸매를 강박적으로 조절한다. 거식증이라고 불리는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등이 포함된다. 주로 여성과 10~20대 젊은 층에서 나타난다. 거식증의 평균 발생 연령은 16세, 폭식증과 폭식장애는 18세로 청소년 시기 발생한다. 성장이 활발한 청소년 시기 섭식장애를 겪는다면 신체성장과 뇌발달 저하를 가져오고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 (...)

섭식장애가 심해지면 어떤 병으로 발전할 수 있나.

영양부족을 동반하고 뇌신경전달물질의 저하를 초래한다. 그러다보면 신진대사가 줄어들고 장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극단적인 경우 사망까지 이른다. 여성은 무월경이 나타나 난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서, 감정 기능에도 문제가 생겨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 거식증의 치사율은 5% 정도인데 모든 정신질환 중 치사율이 가장 높다.

출처: '섭식장애는 자살과 저출산 원인...국가적 관심 필요해', <매경헬스>, 2022.9.8.
(<https://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693>)

사회적 압력도 원인이 되지 않나?

섭식장애는 사회적 풍조의 영향을 받는다. 심리학적 요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질병이다. 최근 2020년부터 코로나가 만연하면서 가장 취약한 세대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사회관계가 결핍된 10대들에게서 섭식장애가 증가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선 확연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다. 우리 경우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10대의 거식증은 왜 생길까?

날씬한 몸을 선호하는 사회 풍조의 경향에 영향을 받거나 불안을 해소하고자 거식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섭식장애는 자존감이 낮거나 불안도가 높거나 먹을 것을 좋아하는 등 심리적 소인이 있다. 거식증은 심리적인 것과 완벽주의가 결합돼 있다. 전학이나 왕따 또는 새로운 환경에 처해 체중과 다이어트가 돌파

구라고 생각할 때 체중감량으로 진입한다.

부모에게서 원인을 찾기도 하던데.

아이가 살찌는 것을 두고 부모가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거나 감정표현이 강한 집안, 또는 화를 쏟아내는 분위기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이가 섭식장애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다.

날씬한 몸을 만들려는 건 전지구적 경향이다.

섭식장애를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면서 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이어트의 선을 넘나들다가 섭식장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프로아나'(거식증 찬성)도 라이프스타일이라며 전파시키는데 그 단계까지 가면 사실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

교육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영국 등에서는 학교에서 피부나 인종처럼 몸과 외모에 관한 언급도 지양하도록 한다. 우리는 외모에 대한 언급을 너무나 당연시하는 문화다. 자존감이 강하다면 무시할 수 있지만, 취약한 사람들이 '살찐다' '뚱뚱하다'는 말을 들으면 다이어트를 촉발하는 일종의 방아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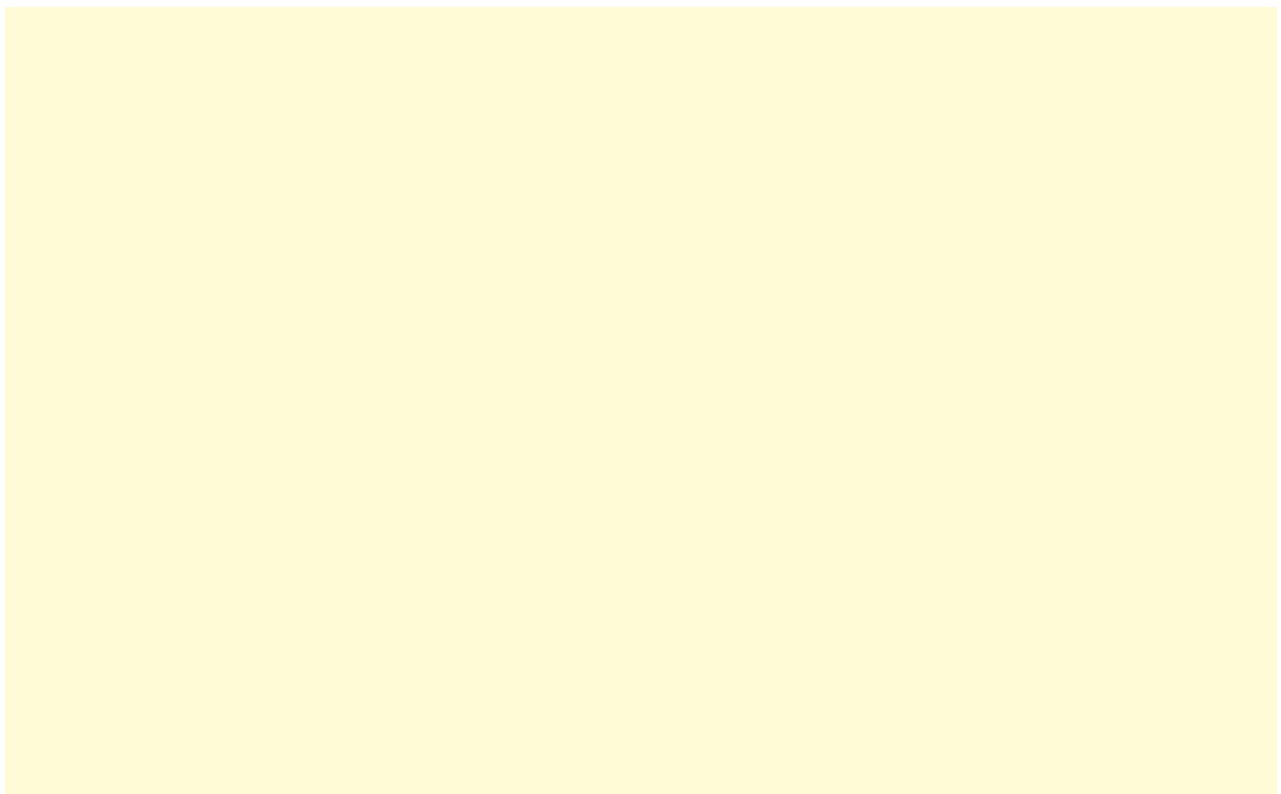
출처: '전학·왕따 때 돌파구로 살빼기도 자존감·불안감 탓 10대 섭식장애', <한겨레>, 2023.2.18.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80227.html>)

1) 섭식장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내용 확인하기>와 연결지어 정리해 봅시다.

2) 섭식장애를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에 대해 고민해 보고, 섭식장애를 '다이어트에 집착하다가 얻는 병'이라고 생각하며 섭식장애를 겪는 개인을 비난하는 사람에게 섭식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해 봅시다.

활동하기

1. 2023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국내 최초로 ‘섭식장애 인식 주간’이 열렸습니다. 섭식장애 인식 주間は 섭식장애를 겪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 넓히기>에서 살펴본 내용을 담아 섭식장애 인식 주간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들어가며

1. 만약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나요?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나고 친구들이 하나씩 하교하는 시간, 당신은 가방에서 빵을 두 개 꺼냅니다. 오늘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혼자서 할머니 댁에 가야 하는데, 전철을 타고 1시간 거리를 가려면 속을 미리 든든하게 채워야 해서 아침에 챙겨 온 빵입니다. 이제 막 봉지를 뜯고 하나를 먹으려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빵을 애타게 쳐다보는 친구들의 시선을 느낍니다. 당신과 모두 비슷한 정도로 친한 친구 A, B, C는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A: 나는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 늦잠을 자서 아침을 못 먹었는데, 동아리 모임 때문에 점심도 못 먹은 거 있지. 배가 너무 고프데 빵 하나만 주면 안 돼?

B: 나는 학교 끝나고 바로 학원에 가야 하는데, 중간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저녁 10시에 학원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빵 하나만 주면 안 될까?

C: 나는 배는 안 고프데 네가 빵 먹는 거 보니까 그냥 나도 먹고 싶다. 내가 1,0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빵 하나 팔지 않을래?

당신은 누구에게 빵을 줄 건가요? (단,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 줄 수는 없으며, 나눠 주지 않고 혼자 두 개의 빵을 모두 먹는다는 선택도 불가능합니다.)

나의 선택	
이유	

내용 확인하기

1. 의료 자원을 모두가 원하는 만큼 누리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p.149-150)

의료진	
병실	
약품, 재료	

2.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할지 결정하는 원칙은 응급실과 일반 병실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p.154)

응급실	()을/를 먼저 치료한다.
일반 병실	()이/가 우선권을 갖는다.

생각 넓히기

1. 비슷한 정도로 아픈 환자들이 있을 때,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가), (나) 중 어떤 입장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 있는 입장을 한 가지 고른 뒤, 그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와 다른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를 제시해 봅시다.

(p.155-158)

(가)	삶의 기회를 더 적게 누려 본 사람이 우선적으로 치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5년을 산 청소년과 70년을 산 노인이 있다면 삶의 기회를 더 적게 누린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돌아가야 한다.
(나)	평균 생존 수명과 환자가 치료받을 경우 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햇수를 비교해 치료 후 더 오래 살게 되리라 예측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환자는 치료 후 3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되고 B 환자는 치료 후 5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면 B 환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야 한다.

()에 대한 지지 논리	
()에 대한 반박 논리	

2. 각 입장을 선택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써 봅시다.

활동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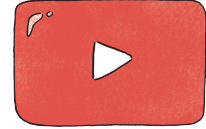
1. 다음 글을 읽고, 글에 제시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해 봅시다. (p.159-161)

초국적 제약회사는 대학, 연구소에서 혹은 공적투자로 연구개발된 신물질 중에서 성공할 만한 혹은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독점계약한다. 더불어 의약품의 주된 성분, 혼합제, 약의 생김새, 적응증 등에 걸쳐 수많은 특허를 등록하여 독점기간을 20년 이상 연장하며 높은 약가를 유지한다. 이들의 독점은 값싼 제네릭(복제약)의 생산을 가로막아 의약품 접근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에이즈치료제가 본격 사용된 1996년부터 전 세계 에이즈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이 “당장 치료하라(Treat Now)”를 외치며 초국적 제약회사에 대항한 이유도 같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며 이윤을 우선시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 때문에 살기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을 먹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다.

국내에도 에이즈치료제 공급 촉구와 약가 인하를 요구하는 투쟁이 있었다. 2000년대 중후반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HIV감염인수가 적고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한국에 신약을 공급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푸제온’이다. 푸제온의 당시 약가는 연간 1천8백만원으로 정해진 보험약가가 낮다며 공급을 하지 않았다. 당시 에이즈활동가들은 왜 약값을 비싸게 매기는지, 왜 약을 공급하지 않는지 문제제기했다. 돌아온 대답은 “의약품 공급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제약회사에게 사람의 생명과 건강권은 구매력과 동의어였던 셈이다.

같은 시기 국내 HIV/AIDS 활동가가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새로 개발된 의약품이 필요했다. 하지만 약가는 너무도 비쌌고, 보험적용도 되지 않았다. 이에 활동가들은 제약회사 앞에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아픈 이들에게 제공하라는 시위와 캠페인을 이어갔다. 하지만 해당 제약회사 사장은 면담 자리에서 ‘돈을 갖고 와서 사면 된다’는 냉담한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비윤리적인 운영방식을 기업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해선 안 된다.

출처: 초국적 제약회사의 후원을 쿼어커뮤니티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 中,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공동성명, 2022.07.07.
(<https://srhr.kr/statements/?idx=12150570&bmode=view>)



들어가며

1. 최근에 온라인을 통해 의료광고를 본 적이 있나요? 어떤 광고였는지, 그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써 봅시다.

플랫폼	ex)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광고 내용	
들었던 생각	

내용 확인하기

1. 의료광고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리를 정리해 봅시다. (p.166-170)

찬성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쉽게 알기 어려운 의학·의료 정보를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의 권리'를 보장한다. - 사람들의 ()을/를 강화함으로써 의료인의 말이나 주장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돕는다.
반대측	<p>광고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기 위한 것인데, 불필요한 ()이/가 많아지면 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p>

2. 한국의 의료광고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봅시다. (p.171-173)

1951년	〈()〉 제정. 전문의가 자기가 진료하는 과목을 간판에 표시하는 것 외의 다른 모든 의료광고 금지.
2003년	()를 통해 진료 정보를 알리는 것이 일반화됨.
2007년	의료법 개정. 원칙적으로 의료광고 허용하되, 금지하는 경우를 따로 정함.
2015년	의료광고 규제가 헌법상의 권리인 '()',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
2018년	의료법 일부 개정. 이전처럼 보건복지부가 아닌 의사협회, 치과 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각각 의료광고 ()를 맡게 됨.
2020년	보건복지부와 세 협회가 함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책의 형태로 발간.

생각 넓히기

1.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유형별 위반 사례’를 보고, 표 아래의 두 광고가 어떤 유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p.173)

번호	유형	내용
1	신 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광고	신 의료기술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2	치료 효과 보장 광고	치료 전후 사진 등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치료 사례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3	거짓 또는 과장하는 광고	거짓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 금지
4	다른 의료인과 비방·비교 광고	의료인 간 기술 및 기술 방법 등의 효능·효과를 비교·비방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광고하고자 하는 기술이 타 기술에 비해 우수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5	직접적인 기술 행위, 환부 사진 표기하는 광고	소비자로 하여금 공포감,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 행위나 신체부위, 환부 사진 또는 이미지 광고 금지
6	심각한 부작용을 누락하는 광고	알레르기 반응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건강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필히 적시해야 하나 부작용 적시를 누락한 광고 금지
7	임의적인 명칭을 표기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의료기관의 독자적으로 만든 명칭으로 표기한 광고 금지
8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표기한 광고	언론사 또는 출판사에 소속된 기자가 작성한 글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금지
9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외국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광고 금지
10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광고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 금지
11	수상·인증·보증·추천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및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인증·보증, 수상 경력, 감사장 경력 표기한 광고 금지
12	환자 유인 광고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13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의약품 판매 또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금지

모자 좀 그만 쓰지? 오후 4:05

오후 4:05 하..나도그리고 싶다..

설문하면 탈모치료
할인해준대~ 오후 4:05

오후 4:05 진짜?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탈모치료 **최대 250만원 할인**해 드립니다.

여드름 여드름흉터 다이어트

**수험생 치료 비용
최대 100만원 할인 이벤트**

여드름 3달 패키지 [한약 12주 + Premium 관리 12회]
월 50만원대 240만원 - 15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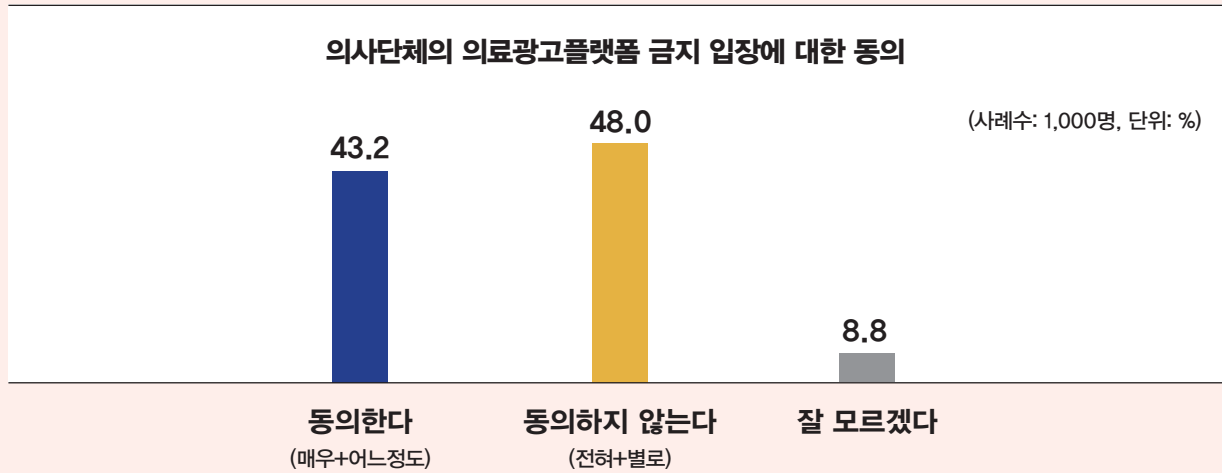
여드름흉터 [한약 12주 + Premium 관리 16회]
-150만원 - 월 30만원대 (10회 내원 99만원)

다이어트 한약
-120만원 - 월 20만원대 (3달 79만원)

활동하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비급여 시술 가격, 소비자 후기 등을 제공하는 의료광고플랫폼의 금지에 대한 입장을 찬성, 반대로 나누어 토론해 봅시다. (p.174-175)

의료광고플랫폼에 대해서도 10명 중 8명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지만 비급여 진료비와 소비자 후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의료광고플랫폼이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비급여 시술 가격, 소비자 후기 등을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83.3%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 9.2%를 크게 상회했다.

연령별로는 50~59세(90.8%)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은 18~29세(13%)에서 가장 많았다.

의사 단체가 비급여 시술 가격과 소비자 후기 제공은 환자를 불법 유인 및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약간 더 높았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8%, 동의한다는 의견이 43.2%였다.

출처: "비대면 진료 국민들 생각은? 재진□만성질환 중심 찬반 '팽팽'" 中, <메디게이트뉴스>, 2023.03.21.
(<https://medigatenews.com/news/661063317>)



들어가며

1.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었나요? 그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고, 가입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입력했나요? 그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떤 장점이 있었나요?

이름	
사용 이유	
입력한 정보	
장점	

내용 확인하기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을 적어 봅시다. (p.179-181)

()	어떤 측정값이나 수집한 기록이자 그것을 가공, 분석해 얻은 결과
()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로 만들어 낸 '나의 디지털 버전'
()	경제활동에서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

2. 기업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병원에 환자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병원이 그 데이터를 넘겨준다고 할 때, 해당 데이터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p.183-184)

3. 다음 중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경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권리로 책의 저자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p.187-188)

①	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내 데이터를 기업에 직접 판매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③	내 데이터를 기업이 어떻게 사용할지 활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 넓히기

1.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은행’이 운영되는 방식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인 데이터 활용 방식과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생각해 봅시다. (p.178-189)

인체유래물은행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은?

생명윤리법 제2조제13호 및 제4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인체유래물은행이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疫學情報),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하여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곳을 말합니다.

인체유래물등 수집

인체유래물은행은 인체유래물연구에 쓰일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인체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별지 제41호 서식으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인체유래물등의 보관 및 관리

인체유래물은행 및 인체유래물은행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인체유래물등을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 1) 보존 중인 인체유래물등을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 금지
- 2) 법 제38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연구자 및 유전자검사기관으로부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은 경우 익명화 의무
- 3)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의무
- 4)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 책임자 지정 의무
- 5) 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에 대하여 법 제39조 준용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이용

- 1)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할 때는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2)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이 인체유래물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합니다.
- 3)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은행 기관위원회는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https://irb.or.kr/menu01/RegulationTarget03.aspx>)

활동하기

1. 다음 기사를 읽고, 팀 단위의 '데이터 기본소득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봅시다.

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의 자원이라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데이터로 얻은 혜택 대부분을 플랫폼기업들이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영미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호주의 정치철학자로 《모든 것의 미래》(Future of Everything·미번역)의 저자인 팀 던럽은 데이터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리는 이렇다. 데이터는 모두가 참여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이 소유해야 한다. 개별 데이터의 가치는 크지 않고 데이터의 총합에서 비로소 가치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이용자가 개별 협상을 통해 몫을 받아 내기보다 국가가 나서서 기본소득 형태로 재분배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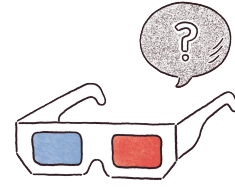
- 일부 데이터는 사유재산 성격이 있어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자는 입법 논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다만 데이터를 사유재산으로만 취급하면 개인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플랫폼들과 개별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자기 데이터에 대한 개인적 보상을 놓고 협상을 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개별 데이터의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데이터는 우리 모두가 참여해 만들어 내는 것이고, 총합으로 모여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어떤 데이터는 사유재산에 해당할지라도 데이터는 공유재로 취급하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다.”

던럽은 '시티즌미(CitizenMe)' '데이터쿱(DataCoup)'처럼 데이터에 대가를 지불하는 앱들을 사례로 들었다. 각각 영국과 미국에 기반을 둔 두 스타트업 서비스를 모두 써 봤지만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질문 4개에 답해 주는 대가로 영국돈 30페니(약 450원)를 벌 수 있을 뿐이었다고 했다.

출처: "데이터가 법적으로 '물건'이라면, 활용 기업에 대가 물을 수도" 中, <경향신문>, 2020.01.22.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00122060000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들어가며

1. 다음 글을 읽고 여러분이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 본 장애인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미디어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렸나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주인공이 자폐스펙트럼 변호사란 설정으로 사회적 편견을 비틀었다는 호평과 콘텐츠로서의 성공을 모두 잡았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우영우, 이를 바라보는 자폐인과 가족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

물론 변호사 우영우는 한국 드라마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장애인 주인공이란 의미가 있다. 지난해 우영우 방영을 앞두고 비판 성명을 냈던 자폐인 당사자 단체(한국 성인자폐(성)자조모임 ESTAS)도 “한국 창작자들은 그동안 자폐당사자를 무능력하고 이상한 존재라는 전형과 서번트 증후군이나 초능력을 섞어 묘사하며 당사자를 객체화했다”며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관찮은 일자리를 얻는 모습을 그려 자폐당사자에 대한 유인 원화를 피하고자 한 노력에는 박수를 보낸다”고 짚었다.

윤진철 사무처장도 “드라마에서 자폐성 장애인이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고기능 자폐인의 빈도만 높아지는 건 그렇게 미디어에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고, 편향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지워선 안 된다고 힘 주어 말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표현 방식이 다른 것 뿐”이라는 것이다.

출처: “우영우’는 무엇을 위한 판타지일까” 中, <미디어오늘>, 2022.07.14.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935>)

내용 확인하기

1. 저자에 따르면 오랜 기간 동안 ‘완벽한 인간’은 ‘뛰어난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도 흠이 없는 서구 귀족 남성’이라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이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요? (p.193)

2. 장애에 대한 두 가지 이해 방식을 정리해 봅시다. (p.194-196)

	원인	해결
장애의 사회적 모형		
장애의 의료적 모형		

3. '장애인권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p.198)

장애를 향한 ()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장애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장애의 ()과 ()에 주목해 장애인의 ()를 주장하는 것

생각 넓히기

1. 집을 한 채 지어 볼까요? 이 집은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집입니다. 어떤 몸을 가진 사람이든 모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p.198-201)

집에 대한 설명

활동하기

1. 다음 글을 읽고,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인 글쓴이가 학교에서 겪었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비상 대피 훈련을 할 때도 내 자리는 항상 교실이였다. 비상 대피 알람이 울리면 학생들은 모두 한 줄로 서서 계단을 내려가야 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재난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것은 '상식'이니까. 화재 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될 수 있고, 갇히면 질식사 위험이 있을뿐더러 엘리베이터는 화재 감지 시 대부분 전원이 차단된다. 그리고 그 훈련의 한가운데 늘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밖에 나갈 수 없는 내가 있었다.

나는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인간이었다. 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도 않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건 우스운 일이었으므로 아무도 내게 대피 훈련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언제나 교실에 있었다. 대피 훈련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아이들에게 “나 버리고 도망가니까 좋냐?”, “너…… 내가 보여? 난 죽었는데?” 따위의 농담을 던졌지만, 실제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친한 친구들은 “불이 나면 널 업고 땄게”라고 약속해주었지만, 불이 났을 때 날 구조해야 하는 책임을 친구가 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 혹 나와 함께 나오지 못했을 때 그 애가 갖게 될 죄책감도 그 애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늘 “나는 버리고 나가~ 두 명 죽을 바엔 한 명 죽는 게 나아”라고 장난스레 응수했다. 그래도 알고 싶었다. 휠체어에 올라탄 몸으로 최소한이라도 나 자신을 지킬 방법을. 대피하지 못하더라도 숨어있을 수 있는 장소를. 그리고 하고 싶었다. 혹여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더라도, 다시 돌아와 먼저 그 장소를 찾아 보겠다는 약속을. 나는 그 무엇도 듣지 못하고 약속받지 못한 채 12년을 보냈다.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차라리 죽음을 바라게 만드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피할 경로를 아예 만들어놓지 않는 것은 그저 누락일까, 아니면 살해일까?